◇상표를 구성하는 표장의 의미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도형·기호란 무엇을 의미하나?

상표법상의 상표라 함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표구성이 기호·문자 또는 도형만으로도 가능하고, 이들을 결합한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문자」란 사람의 말과 음(언어를 표시하는 시각적인 부호)의 글자이며, 「도형」이란 점 또는 선으로 표현하는 그림의 모양을 말하며, 기호란 선에 의한 기하학적인 것을 말한다.

하지만 상표가 문자·도형·기호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그 상품이 보통명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것 △그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것 △현저한 지명,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것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표시한 것 △간단하고 흔히 있는 것을 표시한 것.

◇외국에 상표출원시의 유의점

외국에 상표출원을 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하여야 하나?

먼저 상표는 선정에 의하므로 상표선정시 유의사항으로는 출원대상국의 언어·풍속·관습·종교·인종 등과 그 나라 국민의 기호를 충분히 연구하여 그 나라 소비자에 맞는 상표를 선정하여야 하며 당해국에 선등록이 있거나 선사용상표가 아닌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출원시에는 당해국의 상표법과 상표제도를 검토하여 우선권주장을 인정하고 있는가, 어떤 지정상품에 대하여 몇개의 상표를 출원할 것인가, 본국출원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가, 기타 출원등록절차를 직접 출원인이 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등록후 사용의무규정이나 갱신등록출원절차는 어떠하며 타인의 모방사용 또는 유사상표의 등록 등의 제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상표선정시 유의점

새로운 상표의 선정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상표가 상품에 부착되어 사용될 때에는 그 상품의 얼굴 역할을 하게 되어 상품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게 되므로 상표를 선정할 때에는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상표의 선정은 상표를 사용할 상품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짧고,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오랫동안 기억되며, 소비자 기호에 맞고 또 다른 상표와 구별하기 쉽고, 기업의 장기계획과 조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항외에 상표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중 타인의 선등록상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특허공보를 열람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외국인 출원에 대한 명의변경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출원한 발명을 내국인명의로 우리나라에 출원할 수 있는지?

산업재산권은 일종의 재산권임으로 특허권이 등록되었을 때나 출원중이거나 출원전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자국에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국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그 발명을 내국인 명의로 정당하게 출원할 수 있다. 이때 내국인 출원자가 우리나라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 양도받았다면 외국인이 자국에 최초로 출원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우선권주장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국인 출원자가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만을 양도받아 출원하였을 경우 우리나라에 출원하기 전에 외국에 출원한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었다면 이는 출원전 공지에 해당되어 거절사정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외국인으로부터 자기나라에 출원한 발명을 우리나라에 출원할 권리를 양도받을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양도받는 것이 권리를 안전하게 얻기 위해 필요하다.